

제266회(정례회) 제3차본회의  
2007년 12월 21일 (금)

#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7. 12. 21.  
행정자치위원회

## I.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년 12월 3일  
충청북도지사

나. 회 부 일 자 : 2007년 12월 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 제266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2007. 12.14)상정,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질의·토론, 심사의결(원안가결)

## II.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국장 이석표)

### 1. 제안이유

-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직원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하고, 감면대상 요건완화, 감면싯점 조정, 용어 정비 등 그동안 도세감면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농협중앙회 구관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안제9조의2 신설)

- 농협중앙회의 구관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

※ 종전에는 「충청북도 도세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었음.

나. 1가구1주택 과세특례 요건 완화(안 제12조제3항)

- 40㎡이하 1억원 미만 1가구1주택 취득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함에 있어 60세이상·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할 경우 2주택 중복 보유 허용

다. 주택재개발사업 감면대상 판단시점 조정(안 제14조제3호)

- 원주민의 주거안정 취지에 맞게 감면대상 판단시점을 “정비구역 지정고시일”로 앞당겨 조정

라. 주거환경개선사업 감면대상 판단시점 조정(안 제15조제2호)

-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시 사업시행절차변경에 따라 감면대상 판단시점을 종전의 개선계획 수립과 상응하는 “정비구역 지정고시일”로 조정

마. 지방공사 감면대상 추가(안 제19조제1항)

- 지방공사의 구분 지상권설정등기 등록세 면제 추가(지하철공사에 한함)

바. 혁신도시 이주직원에 대한 주거안정 지원(안 제30조의3 신설)

- 혁신도시 이주 직원이 공공기관 이전일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신설

※ 85㎡이하 면제, 85~102㎡ 75% 경감, 102~135㎡ 62.5% 경감

### Ⅲ. 검토보고 요지

(행정자치전문위원 고일준)

#### 1. 개정취지

개정조례안은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직원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방세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감면대상 확대, 감면시점 조정, 용어 정비 등 그동안 도세감면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려는 것이 취지임.

#### 2. 감면내용

가. 농협중앙회 구관사업용 등 부동산에 대한 감면(안 제9조의2 신설)

- (1) 사유 : 산재되어 있는 지방세 감면규정을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로 일원화
- (2) 내용 : 충청북도 도세조례 제21조를 삭제하고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제9조의2 신설

나.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가족에 대한 1가구1주택 감면대상 확대(안 제12조제3항)

- (1) 사유 : 실제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도 혜택부여
- (2) 내용 : 호주승계예정자 및 호주승계인 ⇒ 부양하고 있는 자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감면 판단시점 조정(안 제14조제3호, 안 제15조제2호)

- (1) 사유 : 정비구역 지정일부터 투자목적의 소유권 이전이 발생하므로 원주민의 주거안정 취지에 맞게 조정
- (2) 내용 :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최초 시행 인가 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 →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라.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이주직원에 대한 감면 신설(안 제30

조의3 신설)

- (1) 사유 : 혁신도시 이주공공기관 직원 주거안정
- (2) 대상 : 이전공공기관 직원이 충청북도내에 취득하는 1가구 1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감면
- (3) 감면세액 : 전용면적 기준
  - 85㎡이하 면제, 85㎡초과 102㎡이하 75% 경감, 102㎡ 초과 135㎡이하 62.5% 경감

3.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와 내용에는 이견이 없으나, 조례개정 문안은 「충청북도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맞게 작성되어야 하겠음.
- 기타의견으로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는 자치단체의 재정정책과 일반 행정정책 수행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함.
- 그러나 현행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는 지방세법, 도세감면조례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 근거규정이 산재되어 있어 체계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개별적 감면규정의 명확성 미확보, 그리고 감면제도의 운영과정에서 전국 통일성 확보를 이유로 중앙정부(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의해 운영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이 제약을 받고 있어 지방세 감면체계의 일원화 및 자치시대에 걸맞는 운영방안이 요구되고 있다고 하겠음.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생략”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VII. 소수의견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IX.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붙임 :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94
----------	-----

제출연월일 : 2007년 12월 3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 1. 제안이유

- 농협중앙회의 구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사항을 감면조례에 명시하며
- 혁신도시 이주 직원이 구입하는 주택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신설하여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건설을 뒷받침하고
- 현행 감면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사항에 대하여 미비점을 보완하며, 관련법령 표기 등을 정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농협중앙회 구관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신설, 안제9조의2)**
  - 농협중앙회의 구관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
  - ※ 종전에는 「충청북도 도세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었음.
- **1가구1주택 과세특례 요건 완화 (안 제12조제3항)**
  - 40㎡이하 1억원 미만 1가구1주택 취득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함에 있어 60세이상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할 경우 2주택 중복 보유 허용

○ 주택재개발사업 감면대상 판단시점 조정 (안 제14조제3호)

- 원주민의 주거안정 취지에 맞게 감면대상 판단시점을 “정비구역 지정고시일” 로 앞당겨 조정

○ 주거환경개선사업 감면대상 판단시점 조정 (안 제15조제2호)

-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시 사업시행절차변경에 따라 감면대상 판단시점을 종전의 개선계획 수립과 상응하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 로 조정

○ 지방공사 감면대상 추가 (안 제19조제1항)

- 지방공사의 구분 지상권설정등기 등록세 면제 추가(지하철공사에 한함)

○ 혁신도시 이주직원에 대한 주거안정 지원 (신설, 안 제30조의3)

- 혁신도시 이주 직원이 공공기관 이전일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신설  
※85㎡이하 면제, 85~102㎡ 75% 경감, 102~135㎡ 62.5% 경감

3. 의안전문 : 불 입

4. 신·구조문대비표 : 불 입

5. 관계법령 발취 : 불 입



충청북도조례 제 호

##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및 제4항 중 “각 호의 1에” 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각 호의 1에” 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8조 중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기” 를 “각 호에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등을 설치·운영하기” 로 한다.

제8조제5호 중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으로 하며,

제8조제6호 중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의한” 을 “「도서관법」 제31조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으로 하고,

제8조제7항 중 “과학관육성법에 의한” 을 “「과학관육성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로 한다.

제9조 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세법」 제266조제3항에서 “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구매·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2. 보관·가공·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3. 생산 및 검사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4.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와 건축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

제10조 중 “동법시행령” 을 “같은 법 시행령” 으로 하고 “신규등록·이전등록 및” 을 “신규등록 또는 이전등록하거나” 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무역업 또는 무역대리업을 영위하는” 을 “무역을 하는” 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 를 “주택건설사업자” 로 하고, “동법시행령” 을 “같은 법 시행령” 으로 하며, “주택법 제10조 제3항” 을 “「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 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감면한다” 를 “면제한다” 로 하고 “감면된” 을 “면제된” 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 및 호주승계인은” 을 “부양하고 있는 자는” 으로 한다.

제14조제3호 중 “최초 시행인가일” 을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로 한다.

제15조제1호 및 제2호 중 “동법” 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으로 하며, 같은 조제2호 중 “주거환경개선계획의 최초 고시일” 을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부동산” 을 “부동산(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한다)” 로 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중 “각 호의 1에” 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로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중 “각 호의 1에” 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가” 를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로 하고, “민간출자분”을 “민간출자분 및 민간출연분”으로 하며, “법인등기”는 “법인등기와 구분지상권 설정등기(지하철공사에 한한다)”로 한다.

제3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3(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이주직원에 대한 감면) 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직원이 공공기관 이전일(이전에 따른 법인등기일 또는 업무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

1.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 면제
2.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102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 1,000분의 750을 경감
3. 전용면적 102제곱미터 초과 13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 1,000분의 625를 경감

② 제1항에서 “1가구1주택”이라 함은 취득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충청북도 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충청북도 도세조례」 제21조는 이를 폐지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등록말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예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국가유공자 등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 간에 등록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 4. (생략)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 4. (생략)

**제3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 등급 1급 내지 3급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  
-----  
-----  
-----  
-----  
-----  
-----  
-----  
-----  
-----  
-----  
-----  
-----  
-----  
-----  
-----  
-----  
-----  
-----  
-----

1. ~ 4. (현행과 같음)

④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

1. ~ 4. (현행과 같음)

**제3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



록할 수 있는 자간에 등록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 4. (생략)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 4. (생략)

**제4조(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 ①(생략)**

②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 또는 한센정착농원 대표자가 한센환자의 재활사업을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한센복지협회 기타 비영리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8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평생교육 시설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의

-----  
-----  
-----  
-----.

1. ~ 4.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1. ~ 4. (현행과 같음)

**제4조(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 ①(현행과 같음)**

② -----  
-----  
-----  
-----그 밖에  
-----  
-----.

**제8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각 호에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등을 설치·운영하기-----  
-----  
-----  
-----  
-----





지 아니하는 경우와 2년 이상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신설〉

니하는 경우-----  
-----  
-----  
-----  
-----.

**제9조의2(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세법」 제 266조제 3항에서 “구판사업 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구매·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2. 보관·가공·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3. 생산 및 검사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4.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와 건축물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

**제10조(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내버스운송사업·마을버스

**제10조(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  
-----  
-----같은 법 시행령-----  
-----

운송사업 · 시외버스운송사업 · 농  
어촌버스운송사업 · 개인택시운송  
사업 및 일반 택시운송사업에 직  
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  
동차를 신규등록·이전등록 및 할  
부매입 등의 사유로 저당권설정등  
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  
제하고,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운  
송사업용으로 취득하는 버스로서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제11조(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  
차 등에 대한 감면)**

- ① ~ ② (생략)
- ③ 대외무역법에 의한 무역업 또는  
무역대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수출  
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 중고  
기계장비·중고선박 및 중고항공기  
등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  
다.

**제12조(주택에 대한 감면) ① 공공  
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  
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  
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

-----  
-----  
-----  
-----  
-----신규등록 또는 이전  
등록하거나 -----  
-----  
-----  
-----  
-----  
-----.

**제11조(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  
차 등에 대한 감면)**

- ① ~ ② (현행과 같음)
- ③ -----무역을 하는  
-----  
-----  
-----  
-----  
-----  
-----.

**제12조(주택에 대한 감면) ① 주택건  
설사업자-----  
-----  
-----  
-----  
-----  
----- 같은 법  
시행령-----**



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월(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주택을 취득한 자는 건축주가 보존등기한 날부터 2월,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및 임대주택사업자의 부도로 인하여 임차인이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하여 취득하는 자가 법령의 규정이나 천재·지변·사변·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등기가 가능한 날부터 2월)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③ 제2항에서 “1가구1주택” 이라 함은 취득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또는 국가유

면제한다.

면제된

③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

2. 동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계획  
의 최초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사업시행자 지정  
을 받지 아니하고 시행한 주거  
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하여 취득  
하는 주거용 부동산과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부동산

**제16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 ①(생략)
- ②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37조의 규정에 의  
하여 승인된 시장정비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  
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취득일부터 2월 이  
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  
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  
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사  
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  
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  
-----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  
-----  
-----  
-----  
-----  
-----  
-----

**제16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 ①(현행과 같음)
- ②-----  
-----  
-----  
-----부동산(주거  
용 부동산을 제외한다)-----  
-----  
-----  
-----  
-----  
-----  
-----  
-----

1. ~ 2.(생략)

제17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등기 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1. ~ 3. (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장을 분양 임대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서교부일 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벤처기업용 이외의 용도로 분양 임대한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18조(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

1. ~ 2.(현행과 같음)

제17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  
-----  
-----  
-----  
-----  
-----  
-----.

1. ~ 3. (현행과 같음)

②-----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  
-----  
-----  
-----  
-----  
-----  
-----  
-----

제18조(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①---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동 사업 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1. ~ 4.(생략)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새로이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 등은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전동차 (지방세

-----  
-----  
-----  
-----  
-----  
-----  
-----  
-----  
-----  
-----  
-----  
-----

1. ~ 4.(현행과 같음)

②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  
-----  
-----  
-----  
-----  
-----  
-----  
-----

**제19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① -----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  
-----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또는 민간출자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부분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과 전동차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신설>

-----  
-----민간출자분 및 민간출연분  
-----  
-----  
-----  
-----법인등기와 구분지상권 설정  
등기(지하철공사에 한한다)-----  
-----  
-----  
-----.

**제30조의3(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이**

**주직원에 대한 감면)** 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직원이 공공기관 이전일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일 또는 업무개시일)로부터 2년이내에 주택을 취득하여 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

1.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 면제
2.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102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 1,000분의 750을 경감

	<p>3. 전용면적 102 제곱미터 초과135 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 1,000분의 625를 경감</p> <p>②제1항에서 “1가구 1주택”이라 함은 취득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 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충청북도 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p>
--	---

## 【관 계 법 령】

### □ 지방세법

**제7조(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①지방자치단체는  
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  
일과세를 할 수 있다.

**제9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제7조(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 및 제8조(수익 등 사유로 인한 불균일 과세 및 일반과세)  
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  
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

**제112조(세율)**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  
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  
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  
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개정 1998.12.31, 2003.12.30,  
2005.12.31>

1. 별장 :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 또는 면에 소  
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
3. 고급주택 :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풀장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고급오락장 :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용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5. 고급선박 :비영업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선박
  6. 삭제 <2000.12.29>

**제266조(농어민관련사업 등에 관한 감면)** ③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가 구관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자회사에게 농수산물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경감률을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으며,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 (등록 등)** ①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예사와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학예사와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및 시설에 관한 등록 요건과 등록 및 변경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도서관법

**제31조 (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①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자료 및 사서직원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군·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구청장은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의 설립자가 당해 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할 때에는 시·군·구청장에게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40조 (등록 및 폐관)** ①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전문도서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전문도서관을 설립(이하 "사립 전문도서관"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자료 및 사서직원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청장에게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구청장은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립 전문도서관의 설립자가 해당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할 때에는 시·군·구청장에게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 □ 과학관육성법

**제6조 (등록)** ① 과학관(국립과학관을 제외한다)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관의 시설·과학기술자료 및 전문직원에 관한 등록요건을 갖추어 당해 과학관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설립계획의 승인을 얻어 설립한 사립과학관의 경우에는 준공후 지체없이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설립목적
2. 명칭
3. 소재지
4. 설립자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주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5. 시설명세서
6. 과학기술자료의 목록
7.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과학관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은 과학관(이하 "등록과학관"이라 한다)이 제2항 각호의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 □ 주택법

**제9조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① 연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또는 연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

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하며, 이하 "고용자"라 한다)

##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7호의 기관을 말한다.
2. "이전공공기관"이라 함은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제29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개별이전하는 공공기관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